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, 6556 / 전송 (02)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 (시청본관3층) / 법무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자 이순재

문서번호 법무11010-2973
 시행일자 1999. 11. 24. ()
 (경유)(제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보존기간	시 장		
공개여부	감 의 문		
가담인원	진 전	1999. 11. 24	
법무담당관	박 동 봉	기탁인원	
		◎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	
★ 기안자	이순재	협조	
심사자	이인재	심사일	11. 24



제목 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 발령 대규제 676 호

1.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11. 30 (화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76호

- 붙임 : 1. 발령목록 1부.
 2. 발령안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11. 30 (화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76호

첨부 : 1. 발령목록 1부

2. 발령안 2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(제3안)

수신 : 총무과장

제목 : 예규 발령조치 통보

1.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11. 30 (화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76호. 끝.

첨부 : 발령목록 1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기타기타사항

예 규 발령 목록

□ 총 1 건 (페이지 1)

연 번	법 규 명	일 련 번호	주 관 부 서
1	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	제676호	총 무 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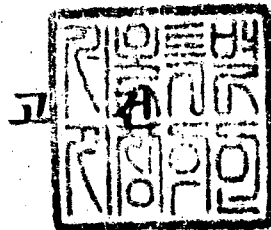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

지침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9년 11월 30일

기차역도관상

서울특별시장


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안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우리시 소속차량의 불용 및 매각처분에 관한 규정이 『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』에 통합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상실된 동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
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안
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청

서울특별시

(우)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/전화 731-6213, 6613/전송 731-6219
 처리부서 : 총무과(본관 4층)/과장 권영규/담당사무원 김성중/담당 류재욱

문서번호 총무12461-1951
 시행일자 1999. 11. 19.
 공개여부 (공개)

수신 법무담당관
 참조

선람			지시	
접수	일자	99.11.19	결재·공람	법무담당관
	번호	2294		행정담당관
처리과			총무담당관	
담당			법무담당관	
심사자			심사일	

재 목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 발령의뢰

1. 법무11000-2376(99.11.10)호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 방침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 방침서 1부.끝.

총 무 총무과 *권영규*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731-6213 / 모사전송731-6219
 처리부서: 총무과(시청본관4층)/과장 권영규/담당사무관 김성중/담당 류재욱

문서번호 총무12461-

시행일자 1999. 11.

경유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보존기간	3	시 장
공개여부	공개	인사부
행정 관리국장	전 결	
총무과장	권영규	법무담당관 심사관 회계과장 김이리
기 안	류재욱	사법관리담당사무관 김성중 협조
심사자		심사일

제 목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(안)

1. 법무11000-2376(99.11.10)호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과 관련입
 니다.

2. 우리시 관용차량에 대한 불용결정 및 매각과 관련하여 "서울시물품관
 리조례(1988년제정)"와 "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(1984년
 제정)"이 제정 운용중에 있으나

3. 현재는 서울시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및 매각이 시행되고
 있어 별도로 처리지침을 운용하는것이 효율성이 없으므로 규제완화와 불필요한
 법령정비 차원에서 "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"은 폐지코자합니다.

첨 부 :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(안)1부

(제2안)

수신 법무담당관

제 목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 발령의뢰

1. 법무11000-2376(99.11.1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 방침을 별첨과 같이
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 폐지 방침서 1부.끝.

총 무 과 장
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안

문서번호	1998.11.18	16호
작성일자	1998.11.18	16호
작성부서	교통기획팀	교통기획팀
작성인	김영민	김영민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우리시 소속차량의 불용 및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이 『서울특별시
시물품관리조례』에 규정됨에 따라 존치실의이 상실된 동 지침을
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폐지지침안

서울특별시소속차량의불용결정및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